

의안번호	2204520
의 퇴 인	맹성규의원
회 답 일	2024.11.21
추계번호	24B42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주기로 국가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840만원, 2030년 2,04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4억 6,000만원(연평균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용 (안 제4조의2 신설)	358	—	—	—	—	358	72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4	20.4	20.4	20.4	20.4	102	20.4
합계	378.4	20.4	20.4	20.4	20.4	460	92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기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2	안 제4조의 2 신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해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의2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u>국토의 균형발전</u>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u>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u>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제1항)</u>	재량규정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49조의2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평가)	×	• (미첨부3호) 도시공원의 품질, 운영관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단위별(개별 도시공원), 도시단위별(행정구역별) 평가체계 구축 및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현황 평가·파악을 위한 공원·녹지평가체계 수립방안 연구용역('24.8~'25.1)사업을 진행중
2	안 제4조의 2 신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3	안 제10조의2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	• (미첨부3호)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공원·녹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현황 평가·파악을 위한 공원·녹지평가체계 수립방안 연구용역('24.8~'25.1)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 (미첨부3호)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며, 향후 재정지원 대상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확정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국비 지원의 규모, 내용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49조의2 (국가도시공원위원회)	○	• (추계)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용(안 제4조의2)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용(안 제49조의2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5년 주기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구용역 사업비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
 - 개정안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할 경우, 평균 3.6억원으로 추산
 -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사례 관련 계획 수립비용

(단위: 백만원)

사업 년도	사업명 (사업부처)	과제비용	사업비
2024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남북도로 개통, 민간 투자 급증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357
2024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 지역거점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추진을 통해 지역 주력사업위기와 일자리감소에 대응하고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 구축방안, 공간계획 방안 등 모색	500
2023	생활물류산업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육성정책, 연구개발 촉진 등 관한 사항 등 포함	196
202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 국가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책방향, 교통사고 현황, 감소 목표, 감소 방안 등 포함	400
2021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추진방향, 안전도 향상 방안 등 포함	196
2020	제3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어촌·어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 방향 제시	500
평균			35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용 (안 제4조의2 신설)	358	-	-	-	-	358

- (안 제49조의2 신설)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

회를 둘 경우 위원회 운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임
 - 다만,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 내 운영중인 위원회 평균 위원수, 평균 회의개회 일 수 등을 적용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토교통부 3분기 행정위원회 평균 위원수 24명(공무원 위원 7인, 민간위원 17인), 회의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민간위원 17인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9조의2 신설)	20.4	20.4	20.4	20.4	20.4	460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주기로 국가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840만원, 2030년 2,04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4억 6,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용	358	—	—	—	—	358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4	20.4	20.4	20.4	20.4	102
합계	378.4	20.4	20.4	20.4	20.4	460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